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4일

발 의 자: 최호정, 강감창,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제리, 김진철, 김현기, 맹진영,

우창윤, 이신혜, 이윤희,

조상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재 시행규칙과 서울시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시도시 계획위원회 재상정 요건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업무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안건의 재상정)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재상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1조의2(안건의 재상정) 시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
		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재
		상정 할 수 있다.